

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2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1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(2025.9.19.)에 따라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추가하여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지원

2. 주요내용

- 가.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대상(50%)에 병역 의무 이행 청년 추가
(안 제7조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: 【붙임 4】
- 바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기간 : 2025.10. 1. ~ 2025.10.13. (12일간)

- ※ 「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1호에 따라 단축
- 사. 기타 참고사항

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예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소관 실·국		문화체육관광국
입	관광과장	김 민 정
안	관광개발팀장	박 재 균
자	담당자 (연락처)	임 병 찬 (481-3407)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100분의 50 감면</p> 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「<u>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</p>